「의정부법조타운 S1블록, S3블록」
공공분양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다문화가족) 안내

(홈페이지 게시용)

○ 유형 및 배정호수 : 총 4세대(배정세대 외 예비대상자 20세대)

지구	블록	주택형 (약식표기)	배정 세대	예비 대상자	비 고
합 계			4	20	○ 위치 : 의정부법조타운 S1블록, S3블록
의정부 법조타운	S1	59A (59AL)	2	10	○ 신청서 접수 마감일: 2026. 11. 16.(월) ○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6. 11월 말(예정) ○ 경기도 확정통보일: 2026. 12. 1.(화) ○ 청약접수일: 2026. 12월 중(예정) ○ 문의전화: 1600-1004 ※ 상기 세대수 및 분양일정 등은 예정사항으로, 변경될 수 있음 자세한 사항은 공급처 안내문 및 입주자모집공고 확인必
	S3	59A	1	5	
		59B	1	5	

※ 주택형의 숫자는 전용면적(㎡)을 의미

○ 접 수 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다문화가족 담당자)

○ 신청서 접수 마감일: 2026. 11. 16.(월) 18:00 방문신청 (단, 휴일은 제외)

○ **경기도 최종 확정 명단 통보일: 2026. 12. 1.(화)**

○ 선정방법 : 배점기준표(아래 참조)의 종합점수 고득점순으로 우선순위 결정

○ 문 의 처 : 수원시 이주민정책과(☎031-5191-2709)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다문화가족 담당자

○ 분양문의 : ☎ 1600-1004

○ 다문화가족 특별공급 신청 자격기준 및 세부요건

자격기준	세 부 요 건
다문화가족	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구성원이며, 2. 배우자와 3년 이상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한 자
성 년 자	1. 민법에 따른 성년자(만19세) 2. 미성년자 세대주 중 아래의 경우 -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 국적 미취득자는 신청인이 될 수 없음(한국국적 배우자가 신청)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배우자, 직계 존·비속,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 단, 배우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재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 판정
지 역	1. 주민등록등본상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2.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에 거주
청약통장	1. 가입기간 6개월 이상이며 2. 월 납입 6회 이상
신청 제외대상 등 세부내용	공급처 안내문 및 입주자 모집공고 등 확인

○ 다문화가족 특별공급 자격입증 제출서류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준용)

<table>
<tr><th>종 류</th><th>세부내역</th></tr>
<tr><td colspan="2">(서식1) 특별공급알선신청서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서식6) 함께 제출)
(서식2) 주택 알선순위 배점 기준표, (서식3)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여권 사본</td></tr>
<tr><td>주민등록등본(상세)
또는 초본</td><td>-세대원(신청자 포함) 및 주소지 등 확인
-주택공급을 신청하려는 배우자가 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도 추가 제출</td></tr>
<tr><td>가족관계증명서</td><td>-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 확인
*입양인 경우에는 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td></tr>
<tr><td>혼인관계증명서</td><td>-혼인신고일 확인</td></tr>
<tr><td>기본증명서(상세)</td><td>-국적취득 확인(필요 시, 해당자에 한함)</td></tr>
<tr><td>청약통장 가입확인서</td><td>-청약통장 가입기간 및 납입금액 등 확인(청약통장 가입은행 발급)</td></tr>
<tr><td>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td><td>-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원의 직업유무, 자영업 운영여부 등 판단</td></tr>
<tr><td>무주택 입증서류</td><td>-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또는 지방세 미과세 증명서
(최근 10년간 전국 단위, 세대구성원 전원)
*납부 이력 있을 시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 관리대장 등 추가 제출</td></tr>
<tr><td>소득입증서류</td><td>-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2에서 정하는 성년자(만 19세 이상 등)로서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 서류
<table>
<tr><th colspan="2">해당자격</th><th>소득입증 제출서류</th><th>발급처</th></tr>
<tr><td rowspan="2">근로자</td><td>일반근로자</td><td>*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재직증명서</td><td>*해당직장
*세무서</td></tr>
<tr><td>신규취업자</td><td>* 금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명서
* 재직증명서</td><td>*해당직장</td></tr>
<tr><td rowspan="6">자영업자</td><td>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td><td>*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사업자등록증</td><td>*세무서</td></tr>
<tr><td>간이과세자 중
소득세미신고자</td><td>*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td><td>*세무서</td></tr>
<tr><td>신규사업자</td><td>*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본)
* 사업자등록증</td><td>*국민연금 관리공단
*세무서</td></tr>
<tr><td>법인사업자</td><td>*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 법인등기부등본</td><td>*세무서</td></tr>
<tr><td>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td><td>*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td><td>*세무서
*해당직장</td></tr>
<tr><td colspan="2">국민기초생활수급자</td><td>* 수급자 증명서</td><td>*동사무소</td></tr>
<tr><td colspan="2">비정규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td><td>*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td><td>*해당직장</td></tr>
<tr><td colspan="2">무직자</td><td>* 비사업자 확인 각서(서식4)</td><td>*접수장소</td></tr>
</table></td></tr>
<tr><td>-임신진단서
-장애인증명서</td><td>-배점기준표 참고, 해당자에 한함(가점)</td></tr>
</table>

○ 신청시 유의사항

1)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더라도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상 **특별공급 청약접수일에 인터넷 청약의 방법으로 LH청약플러스(apply.lh.or.kr)에서 별도로 청약 신청하여야 합니다.**
※ 청약 접수와 관련하여 별도 개별 안내하지 않으며, 미접수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 및 계약불가)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공급함에 유의하여 주시고,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적격심사 결과 주택소유·재당첨제한 등 부적격 사유가 있는 경우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되어 당첨일로부터 1년간 다른 공공주택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는 등의 불이익이 있사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분양단지, 모집단지별 접수일정 중복으로 인하여 기관 추천 대상자 발표일 이전에 다른 단지 중복 신청을 하는 경우 선정여부와 관계 없이 중복 접수한 신청 건은 무효가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단, 선정자 발표일 연기 된 경우 당초 발표일 이후 신청 가능함)

4) 배점은 성평등가족부 배점기준표를 따릅니다.

5) 본 안내문은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을 위해 필요한 대략적 사항만을 기재한 것으로, 공급대상 주택관련 세부사항, 공급일정, 유의사항 등의 사항과 관련하여 **공고문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인의 착오 신청으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 신청자 본인의 책임이오니 본인의 신청자격을 정확히 확인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진행일정

: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26.11.16. 마감) → 경기도 최종 확정 명단 통보('26.12.1.) → 인터넷청약접수('26.12월 중 예정)

* 상기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니, 추후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식1]

다문화가족 국민주택 특별공급(분양) 알선 신청서

신청인 ※국적 미부여자는 신청인이 될 수 없음	행정구	수원시 구	행정동	동	
	성 명 (청약통장가입자)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연락처		
			비상연락처		
	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인지에 의한 한국국적자		결혼이민자 국적취득 여부	(여, 부)	
가 구 원 수		명	혼인기간	년 월	
무 주 택 기 간		년 월(증빙서류 별첨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신 청 구 분	지역		유형		주택형

청약자격 * 모두 충족 시 신청 가능	자격 기준(공고일 현재 기준)	확 인 (O/X)
	다문화가족 구성원(배우자와 3년 이상 같은 주소지) ※ 다문화가족 : 결혼이민자 또는 귀화·인지에 의한 한국국적자 + 한국국적자(출생·귀화·인지)	
	성인(만 19세 이상), 해당 지역 거주자 → 주민등록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무주택 세대구성원(세대원 전원 무주택)	
	청약종합저축 가입(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입) → 청약통장 가입확인서(은행발급)	

위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 기재 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 결과 자격이 다르거나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계약취소는 물론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되더라도 이를 감수할 것을 각서하고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시·도지사 귀하

※ 유의사항 :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금회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서식2]

주택 알선 우선순위 배점 기준표

☐ 배점기준표에 따른 배점

평점요소	배점	배점기준 기준	점수	신청자사항 연월일 등	신청자사항 기간 등	점수	비 고 (구비서류)
무주택기간	20	10년 이상	20	. . .	년 월		① 세대원 전원 소유경력이 없을 경우 : 신청자가 30세가 되는 날(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공고일 ② 세대원 1인이라도 소유경력 : 주택 최종 처분일(처분일이 신청자가 30세가 되는날이나 혼인신고일 이전일 경우 ①을 따름)~공고일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지방세 미과세 증명서), 필요 시 건물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분양권 등의 매매계약서 등
		9년 이상~10년 미만	18				
		8년 이상~9년 미만	16				
		7년 이상~8년 미만	14				
		6년 이상~7년 미만	12				
		5년 이상~6년 미만	10				
		4년 이상~5년 미만	8				
		3년 이상~4년 미만	6				
		3년 미만	4				
배우자와 혼인기간	20	15년 이상	20	. . .	년 월		* 혼인기간 :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배우자와 혼인 지속 기간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13년 이상~15년 미만	17				
		11년 이상~13년 미만	14				
		9년 이상~11년 미만	11				
		7년 이상~9년 미만	8				
		5년 이상~7년 미만	6				
		3년 이상~5년 미만	4				
세대원 구성	15	5인 이상	15	명			* 세대원 : 신청자,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배우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재 여부와 무관하게 인정) ⇒ 주민등록등본, (필요시)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4인	11				
		3인	7				
		2인 이하	3				
특별공급 해당지역 거주기간	15	10년 이상	15	. . .	년 월		* 신청자가 특별공급 해당 지역에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 주민등록등본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 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본다
		8년 이상~10년 미만	13				
		6년 이상~8년 미만	11				
		4년 이상~6년 미만	8				
		2년 이상~4년 미만	5				
		2년 미만	3				
소득 요건	20	100% 이하	20	원 명	%		* 가구원 전원의 월평균 소득합계/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대비 비율 ⇒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등 * 소득입증서류 및 심사방법 등 관련 사항은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교통부고시)'을 준용함. 단, 가구원 수는 세대원 전원의 수를 의미
		100% 초과~120% 이하	15				
		120% 초과~140% 이하	10				
		140% 초과	5				
국적취득 여부	10	국적취득	10	미취득/취득			* 국적취득 : 신청자 및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 ⇒ 주민등록증, 국적취득 사실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상세)
미성년 자녀 수	가점	미성년자녀	3명↑ 5 2명 3 1명 1	명			* 신청자 및 배우자의 미성년 자녀 (만 19세 미만)의 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세대원 중 장애인		중증장애인	2명↑ 5 1명 3	명			* 세대원 중 중증장애인의 수 ⇒ 장애인증명서(해당자에 한함)
본인 배점 합계							* 허위 작성 시 무효 처리

※동점자 처리기준(월단위로 환산하여 오래된 순으로 함): 배우자와 혼인기간>무주택기간

2 월평균소득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2에서 정하는 성년자로서 규칙

제2조제2호의3에 해당하는 자 전원의 소득

세대구성원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월평균소득(원)
소득 합계				
	본인		–	
	배우자		–	
	자녀 1		–	
	자녀 2		–	
	부모 1		–	

본인은 우선순위 배점기준과 세대원 전원 월평균 소득 작성에 있어 허위사실 없이 정확히 기재하였으며, 최종점수에 이의가 없음을 서명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 명 (인)

확인자 동행정복지센터 담당자 주무관 (인)

[서식3]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본 주택 신청과 관련하여 경기도·수원시가 동의인(본인)에게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하는 정보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7조 2항, 제22조 규정에 따라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정보입니다.
이에 본인은 경기도·수원시가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table>
<tr><td>고지내용</td><td colspan="2">1. 개인정보 수집·이용자 : 성평등가족부, 경기도, 수원시,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부조 및 사회서비스 제공자(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업무의 위임·위탁기관을 포함), 사회복지관련 서비스 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입주가격 심사 및 계약 안내
3.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기본항목] 이용신청서의 기재사항 개인정보(이름, 가족사항), 연락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본인 및 가족의 개인정보(민감정보(건강정보)),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건강(의료)보험증, 임대주택 우선공급자격정보, 주택소유정보,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증명, 장애인증명, 차상위(자활, 장애인, 한부모, 본인부담경감대상, 우선돌봄) 증명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입주예정자] 5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음.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입주 신청이 거부될 수 있음)</td></tr>
<tr><td rowspan="3">동의사항</td><td>본인은「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 처리에 동의합니다.</td><td>[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td></tr>
<tr><td>본인은「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건강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 처리에 동의합니다.</td><td>[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td></tr>
<tr><td>본인은「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의 처리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 처리에 동의합니다.
(세대원의 정보 열람·제공 동의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본인 부담함)</td><td>[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td></tr>
<tr><td colspan="3">년 월 일

서약자(동의자) 성 명 :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
시·도지사 귀하</td></tr>
</table>

[서식4] 소득이 없는 성년 세대원일 경우 작성

비사업자 확인각서

(다문화가족 주택 특별공급 신청자용)

신청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자 ※ 성년자만 기재	관 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확 인
			-	
			-	
			-	
			-	
			-	

본인은 다문화가족 주택 특별공급을 신청함에 있어 신청구비서류 중 "자영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음을 확인하며, 향후 사업자등록상태 검색결과 사업자임이 판명될 경우(허위서류 제출) 당첨취소 또는 주택공급 계약의 취소 및 관련 입주자저축의 청약효력 상실 등의 조치가 있더라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치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서식5]

임신증명 확인서

(다문화가족 국민주택 특별공급 신청자용)

본인은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제출하고, 임신 중에 있음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다문화가족 국민주택 특별공급의 당첨자로 선정되는 경우, 출산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반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의료기관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하겠습니다.

아울러 출산여부 관련 서류를 미제출하거나, 허위임신·불법 낙태로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의 취소 및 해약조치에 대해 이의제의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① 신청자	
② 진단서 발급일	년 월 일
③ 분만예정일	년 월 일
④ 요양기관명	
⑤ 담당의사(면허번호)	

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식6]

위 임 장

(대리인)

- 성 명 : (인)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위임자와 관계 : 위임자의 ( )

다문화특별공급(분양·임대)을 신청함에 있어 구비서류 일체에 대하여 상기 대리인에게 권한을 위임함.

(위임자)

- 성 명 : (인)
- 생 년 월 일 :
- 주 소 :

년 월 일

시·도지사 귀하